

##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7. 4 (수요일), 15:00 ~ 19:00
- ▣ 장 소 : 전남 순천 낙안읍성 낙민관
-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정신, 이상필,  
이재근, 이태진, 이해준, 채미옥, 최성락,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 단독주택 신축	
3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축사 건축	
4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건물(일본 대사관) 신축	
5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 주택 신축	
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7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아파트 신축	
8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증축	
9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갈매여가녹지조성사업	
10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1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	
12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신축	
13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외 등산로 정비	
14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15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외 하수관거 정비공사	
16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고궁뮤지컬 공연	
17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서울 드림페스티벌 2012 개최	
18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2012 추계 서울패션워크 행사	
1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요사채 개축	
20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내 미륵전 건립	
2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골프장 조성	
22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주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3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창고 용도변경	
24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농가주택 신축	
25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교회 증축	
26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	

27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주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28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9	사적 제394호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3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등 4건	
<b>【검토사항】</b>		
3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32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33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b>【보고사항】</b>		
34	삼척 준경묘·영경묘 사적 지정 보고	
3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7-001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8필지 776㎡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5.9)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2.05.17(문화재청 공고 제2012-158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642필지 286,237㎡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40번지 등 8필지 776㎡
  - 추가지정 후 면적 : 650필지 287,013㎡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4.13, '12.5.3)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m <sup>2</sup> )	지정신청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6-140	대	96	96		
2	풍납동	139-9	대	106	106		
3	풍납동	81-10	대	106	106		
4	풍납동	139-20	대	109	109		
5	풍납동	276-4	전	102	102		
6	풍납동	231-48	대	119	119		
7	풍납동	126-139	대	132	132		
8	풍납동	142-105	도	6	6		
8필지				776	776		

## 2. 서울 한양도성 내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100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0-45(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기존	신축	증감
건축면적	119.27㎡	96.35㎡	감 22.92㎡
연면적	85.93㎡	151.19㎡	증 65.26㎡
높이	4.83m	8.35m(2층)	증 3.52m(1층)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붕형태는 성곽과 어울리게 조정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3.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축사 건축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사적 제43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일원 외
- (3) 신청내용<축사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93-4(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최고높이 : 6.0m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 건축면적/연면적합계 : 362.44㎡
    - 건축용도 : 축사(우사)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27/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상기 축사 건립 예정지는 제방 형식인 높이 3m 내외의 고속화도로를 사이에 두고 금척리 고분군과는 차폐되어 문화재로부터 인지되지 않는 곳에 위치함으로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축사 건립 예정지 주변에는 이미 기존 축사들이 분포하고 있음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 경복궁 주변 건물(일본 대사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에서 건물(대사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문화재구역에서 약 90여m 이격된 곳에 기존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 약 23.45m)을 철거 후 신축(지하 3층, 지상 6층/높이 약 35.80m)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등
- (3) 신청내용<건물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90m 이격)
    - 허용기준 : 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 17m이하,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381.50m<sup>2</sup>
    - 건축면적 : 1,413.16m<sup>2</sup>
    - 연 면 적 : 11,358.86m<sup>2</sup>
    - 규 모 : 지상 6층, 지하 3층, 옥탑(높이 약 35.80m(평지붕))
    - 용 도 : 공공업무시설(일본 대사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20/문화재위원 ○○○, ○○○, ○○○)

- 사업대상지 주변에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경복궁 영역(홍례문~광화문 사이 광장, 동십자각 주변 등)에서 대사관 건물이 조망됨
- 현재의 대사관 건물이 경복궁 영역에서 조망되고 계획건물은 장기적인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고시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5. 창덕궁 주변 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에서 주택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덕궁 주변에서 기존 한식목조 건물을 철거하고 한식목조 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심○○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122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3) 신청내용<주택 신축>

- 위치 : 서울 종로구 원서동 22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6m 이격)

- 허용기준 :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사업내용

구분	기존 주택(철거)	신축 주택
대지면적	132.20㎡	좌동
건축면적	90.95㎡	72.31㎡
연면적	90.95㎡	90.35㎡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한식목조	한식목조(지상), 콘크리트조(지하)
최고높이	약 5.4m	5.25m(용마루 상단)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기타	-	정화조 1식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시 매장문화재 유구 조사 후 사업시행

## 6.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42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0m 이격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569㎡, 건축/연면적 67.54㎡/67.54㎡, 최고높이 4.7m, 지상1층, 1개동, 경량철골조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위 신청 건은 사적 제132호“강화산성”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보존구역)임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80m 이격되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와는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고도와 거리를 보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약 20m만 벗어나면 500m 벗어난 영향검토 지역외이며, 인근은 제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7. 제주 삼성혈 주변 아파트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성혈 주변 아파트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성혈(사적 제134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13 외
- (3) 신청내용<아파트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782-5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00m 이격)
  - 사업내용
    - 높이 : 50m(지하2층, 지상15층)
    - 면적 : 연면적 7,895.34㎡ / 건축면적 914,89㎡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8. 강화 부근리 지식묘 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증축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문화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된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처리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제137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3) 신청내용<오수처리시설 설치>

- 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38번지

○ 내용

- 건축/연면적 54.75㎡/180.03㎡,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m, 방부목 마감

구분	기존면적	증축면적	합계
지하층	125.28㎡		125.28㎡
지상1층		54.75㎡	54.75㎡
합계	125.28㎡	54.75㎡	180.03㎡

※ 참고자료

- 처리규모 : 175㎥/일, 최고오수발생량 : 154.15㎥/일(4~5월)

###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

-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을 현재의 강화된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처리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으로, 고인돌 공원의 공중화장실 및 강화역사박물관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한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마. 의결사항

##### ○ 보류

-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치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재검토



## 9. 구리 동구릉 주변 갈매여가녹지조성사업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갈매여가녹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구릉 주변 갈매여가녹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 (인창동)

(3) 신청내용<갈매여가녹지조성사업>

- 위치 : 경기 구리시 갈매동 392-30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85m 이격/1구역(보존지역))

○ 사업내용

- 토 공 : 토공, 우수공, 상수도공, 하수도공, 부대공 등
- 전기공 : 공원등주 12개, 조명제어함 1개
- 우배수공 : 흡관 192.3m, 집수정 11개소, 플룸관 160m, 맹암거 74m
- 상수도공 : 상수관로 배관 75m, 음수대 3개소.
- 시설 및 포장공 : 파고라, 데크평상, 배드민턴장 2면, 화장실 1동 등 35종
- 식재공 : 소나무외 15종 239주, 박태기나무외 8종 7,706주, 지피 25,060본 등

###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

- 구리포천고속도로와 동구릉 문화재지정구역 사이에 위치한 산비탈면에 여가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마. 의결사항

###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0.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미관 증진을 위하여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 (인창동)
- (3) 신청내용<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 위치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90(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500m이격 /5구역(29m, 9층 이하))
  - 사업내용
    - 사업부지 23,134㎡, 건축/연면적 5,258㎡/25,078㎡
    - 지상 6층, 26m, 1개동(부분), 판매시설
  - ※ 전체사업 6~25층 24개동 중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의 사업 6층 26m, 1개동)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기존에 있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며, 연지구역 추가지정되면서 도매시장 구역 일부가 500m 반경 범위에 포함되었고, 전체사업 중 일부가 500m 안에 들어감

## 마. 의결사항

### ○ 부결

- 동구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1.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삼릉 주변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번지 외

(3) 신청내용<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12 외 89필지(문화재구역과 인접 /2구역(1층, 평지봉 5m, 경사지봉 7.5m))

○ 내용

- 부지면적 : 875,587m<sup>2</sup>
- 조명설치부지 : 655,231m<sup>2</sup>

구 분	1차심의('12.4.18)	금번심의('12.6.13)	비고
조명시설	18.3m(36개), 15.2m(103개)	15m(37개)	△102개
대상홀수	18홀	5홀(8,9,16,17,18)	△13홀
조명시간	-	일몰 후 약 50분	
심의결과	부결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4.1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된 도면내용과 현지의 상황이 일치되지 않아 정확한 검토를 위해선 실제 설치되는 조명의 위치와 횡단면도상의 레벨, 능선과의 관계 등이

정확히 분석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함

-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 주변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당시 주변 지역의 경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는 바, 앞으로도 조선왕릉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2.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삼릉 주변 공장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봉일천리)
- (3) 신청내용<공장 신축>
  - 위치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너조리 111-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2m 이격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3,492㎡, 4개동, 건축/연면적 198㎡/792㎡, 그라스올판넬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3. 청주 상당산성 내외 등산로 정비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외에서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내외에 이용되고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46-7 등
- (3) 신청내용<등산로 정비사업>
  - 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301(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안내판(이정표) 설치 1개소(650\*150\*1800)
    - 등산로 정비 100m(B=1m)
    - 목재계단 1개소(w1500\*13단)
    - 안전로프 설치 20경간(H=0.9) 등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4. 홍성 홍주읍성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주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2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3차 및 제5차 회의(3.14/5.9)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층수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등
- (3) 신청내용<홍성읍 오관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9-28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m 이격)
    - 2004년 승인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동문 3구역(3층 이하, 10m 이하), 동문 4구역(5층 이하, 16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1차심의('12.3.14)	2차심의('12.5.9)	금회신청	증감	
건축면적	9,383.97㎡	좌동	좌동		
연면적	123,983.27㎡	106,882.13㎡	96,590.53㎡		
건축규모	아파트	지상 25층 3동(83m)	지상 21~22층 3동(73.4m)	지상 17~19층 3동(63.7m)	감3~4층, 9.7m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좌동	좌동	
	도시형생활주택	지상 14층 1동(44.7m)	지상 10층 1동(33.1m)	지상 4층 1동	감6층
	주차장	지하 1~3층	좌동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좌동	좌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3.09/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홍성 홍주읍성에서 70여m 이격된 동측에 14층과(44.7m), 25층(83m)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2006년도 작성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동문 5지역(6층 이하, 19m 이하)과 동문 6지역(7층 이하, 22m 이하, 8층 이상 건축시 문화재청과 심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 12월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변경 요청 심의에서도 기존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음
  - 또한, 현지조사에서도 14층, 25층(44.7m, 83m)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홍주 홍주읍성'과 '홍주의 사충'의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5. 연천 전곡리 유적 내외 하수관거 정비공사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천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하수관거 정비>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03-10(도)외 15필지, 273-16(전) 외 7필지(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사업면적 738.1㎡, 길이 543m, 평균폭 1.4m, 평균깊이 2.29m(1.34~3.5m)
    - 관경 : 300mm(오수)~800mm(우수)

### 라. 참고사항

- (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중 2-5호선 도로개설 구간 발굴조사 (2009.서울대박물관)
  - 2009년 당시 현재 도로부분과 보도 부분에 대해 1~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발굴의 진행은 전체 토층을 완전히 들어내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구역 내 구석기 문화층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음

(2) 전곡리구석기유적발굴조사보고서(1992.한양대학교)

- 전곡리 중 2-5호선 끝나는 지점에서 전곡리 유적을 관통하는 37번 국도 지역은 유적 내에서도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으로 유적 형성 이후 하천 운동으로 인하여 원래 토층이 모두 유실되어 문화층이 부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6. 경희궁지 내 고궁뮤지컬 공연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에서 ‘고궁뮤지컬 공연’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내에서 ‘고궁뮤지컬 공연’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26 등

(3) 신청내용<고궁뮤지컬 공연>

- 위치 : 경희궁지 내(송정전 내)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12.9.5~'12.10.1(총 25회 공연), 16:00~22:00(준비, 공연, 정리)

※: 시설물 설치, 운영, 철거기간 : '12.8.20~'12.10.9

- 임시시설물

- 무대 : 상월대 30m×9m, 하월대 34×5m

- 조명구조물, 관람석(21m×22m 2개소/간이의자 800석) 등

※ 1일 평균 800명/ 25일 총 20,000명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7. 경희궁지 내 서울 드림페스티벌 2012 개최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에서 ‘서울 드림페스티벌 2012’ 행사를 개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내에서 ‘서울 드림페스티벌 2012’ 행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26 등
- (3) 신청내용<서울 드림페스티벌 2012 행사>
  - 위치 : 경희궁지 내(승정전 앞)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12.10.1(월)~'12.10.3(수) 중 2일간
      - ※ 시설물 설치, 운영, 철거기간 : '12.10.1~'12.10.3(총3일간)
    - 행사내용 : 세계 타악기 공연(미국, 일본, 유럽, 국내팀)
    - 임시시설물
      - 무대 : 1무대 14.4m×7.2m, 2무대 27m×4.5m, 3무대 20.7m×3.6m
      - 화장실 : 남녀용 4동, 여자전용 2동(1동=6.1m×2.5m×3.0m)
      - 조명구조물, 잔디보호대, 음향시설 등
      - ※ 1일 평균 2,500명/2일간 총 5,000명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음향, 안전관리, 잔디 보호방안 및 민원해소방안을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 18. 경희궁지 내 2012 추계 서울패션위크 행사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에서 '2012 추계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내에서 '2012 추계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26 등
- (3) 신청내용<2012 추계 서울패션위크 행사>
  - 위치 : 경희궁지 내(경희궁 앞 마당)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12.10.22~'12.10.27(6일)
      - ※: 시설물 설치, 운영, 철거기간 : '12.10.8 ~ '12.11.2(총25일간)
    - 행사내용 : 패션쇼, 중소 패션업체 및 디자이너 전시 등
    - 임시시설물 : 텐트 3동
      - 패션쇼장 : 363평(30m×40m×13m/관람객 500석/최대수용인원 800명)
      - 백스테이지 및 자재보관소 : 181평(20m×30m×7m)
      - 전시 및 바이어, 프레스 룸 : 363평(20m×60m×7m)
  - ※ 1일 평균 5,000명/6일간 총 54,000명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9. 경주 남산 일원 내 요사채 개축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에서 요사채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에서 요사채 개축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1길 17 외
  - ※ 보물 제1188호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대상지와 약40m 이격)
- (3) 신청내용<요사채 개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887-1번지 등 2필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규모 : 1동, 지상1층 ← 기존 : 1동(2동 중 1동), 지상1층
    - 건축면적 : 66.69㎡ ← 기존 : 44.92㎡
    - 구조 : 목조, 한식기와(맞배, 홑처마) ← 기존 : 목조, 초가
    - 최고높이 : 5.95m ← 기존 : 4.54m
    - 용도 : 요사채 ← 기존 : 요사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27/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상기 건물 건립지점은 경주 남산 내에 위치하는 천룡사지 내에 입지하며 기존의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구성된 노후되고 누수현상이 있는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천룡사지 내에는 보물 제1188호 천룡사지 삼층석탑이 있고 동 석탑으로부터 약 40m 거리에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지내에 잔존하는 석물들의 내용과 규모등을 고려할 때 이 곳에 대규모 사찰이 존재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사역의 범위와 가람배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역의 범위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축 또는 신축 건물의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2) 유형문화재과 의견(보물 제1188호 천룡사지 삼층석탑 관련)**

- 기존 건물이 누수 등으로 개축의 필요성이 있으나 신청부지는 삼층석탑에서 약 40m 이격된 위치로 삼층석탑과 가까워 천룡사지의 사역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발굴조사를 선행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0. 화순 운주사지 내 미륵전 건립

### 가. 제안사항

전남 화순군 소재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내 미륵전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화순 운주사지 내 미륵전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운주사지(사적 제312호)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 외
- (3) 신청내용<미륵전 건립>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0(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면적 36㎡, 높이 6.75m
    - 양식 : 굴도리 5량가, 이익공, 팔작지붕, 우물천장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건물규모는 최소화 필요

## 21.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골프장 조성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으로 2009년에 1차례 부결된 사항을 수정하여 재신청하였으나, 제6차 사적분과 회의('12.6.13)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하여 보류된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열미리 등
- (3) 신청내용<골프장 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58번지 등 1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격)
  - 내용

구 분	허가신청(1차, '09.11.11/ 부결)	금회 신청	비 고
부지 면적	458,059㎡	좌 동	사업부지를 당초보다 35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건축 면적	2동, 172.93㎡	1동, 109.35㎡	1동, 63.58㎡감소
주차장	2,000㎡	좌 동	-
골프 코스	9홀, PAR36, 3,036m,	9홀, PAR35, 3,215m,	179m 증가
저류조	13,598㎡	10,026㎡	3,572㎡감소
녹지	255,174㎡	318,811㎡	63,697㎡증가
절토량 (1구역/전체)	180,027㎡/1,440,836㎡	38,246㎡/1,047,684㎡	141,781㎡/393,152㎡감소
성토량 (1구역/전체)	267,276㎡/1,258,198㎡	194,775㎡/1,011,958㎡	72,501㎡/246,240㎡감소

## 라. 참고사항

### (1) 추진 경과

- 1989. 9.28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태우관광개발)
  - 당초 행정 절차 과정에서 문화재 영향 검토 없이 건축 허가를 득함
- 1995.11.21 공사 착공 후 경영난에 따른 부도
- 2008. 9.25 경기관광개발 인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09. 5.25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경기관광개발→한국문화유산연구원)
  - 사업부지 일부구간 표본발굴조사 및 현상변경 절차이행 회신(발굴제도과)
- 2009.10.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부결(2009.11.11)
- 2012.6.13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류 통지
- 2012.6.25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 현지조사의견('12.06.25/문화재위원 ○○○, ○○, ○○○)

- 현 사업 부지는 도요지 뒤편에 급경사의 임야가 완충구역으로 위치하므로 유구의 보존에 직접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계곡부를 보강토 옹벽으로 차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원래의 지형이 보존되는 것이 좋음.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여 저사조 등 물막이 공사는 필요하나, 일부 훼손된 계곡부는 원래대로 복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 부지 중 3번 홀은 페어웨이를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범위에 조성 시에는 상부 흙이 도요지 쪽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3) 1차 신청시 현지조사 의견('09.11.04/문화재위원 ○○○)

- 첫째,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사적지 범위를 벗어나서도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특히 '49전', '61-1전' 사이 계곡부에서도 백자편, 가마벽편, 도지미, 소토 등 가마운영과 관련된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사적지와 골프장조성부지 경계는 경작지와 임야의 구분 선과 동일하다. 하지만 도요지는 그 구조 특성상 일정한 경사가 필요하므로 사적지 범위를 벗어나 골프장 예정지 쪽으로 일정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현장에서도 유물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본 사업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환경 및 경관적 측면에서 골프장은 사적지의 바로 배후지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적지 및 유물 분포지에서 최소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복토와 절토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m 이상 절토되는 곳은 사적경계 및 유물 분포지에서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적지 사이 계곡부 안쪽에 계획 중인 'LAKE'는 유적과 가까이 위치할 뿐만 아니라 유적 상부에 대한 대규모 담수시설이어서 유적의 보존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계곡은 자연그대로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 보류

- 계곡의 원형복구, 100m 이내의 구간 계획 등을 보완하여 재검토

## 22. 서울 효창공원 주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용산구 소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주변에서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3.14), 제5차 회의(5.9)시 ‘역사문화 환경 훼손’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100m 이내에 계획된 건물의 층수를 낮추어 재신청한 사항으로, 제6차 회의(6.13)시 현지 조사 후 재검토기로 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
  -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2번지 외
- (3) 신청내용<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 : 서울 용산구 효창동 3-250 일원(문화재구역에서 약 55~58m 이격)
    - 허용기준 : 평지붕 17m이하, 경사지붕 20m이하, 기존 시설물 범위내 개·재축은 허용
  - 사업내용

구분	1차 심의('12.3.14)	2차 심의('12.5.9)	금회신청
건축면적	4,872.71㎡	4,872.71㎡	4,883.51㎡
연면적	51,610.83㎡	50,410.37㎡	50,391.20㎡
규모	○ 지하3층~지상15층 6개동 ○ 지하3층~지상9층 1개동 ○ 지상1층 1개동	○ 지하3층~지상14층 6개동 ○ 지하3층~지상9층 1개동 ○ 지상1층 1개동	○ 지하3층~지상15층 6개동 ○ 지하3층~지상9층 1개동 ○ 지상 1층 1개동
높이	48.9m	44.0m(100m 이내 약 29.5m)	46.90m(100m 이내 약 20.8m~23.7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20/문화재위원 ○○○, ○○○, ○○○)

- 사업대상지는 효창공원에 인접하여 있으나,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100m 이내에는 현상변경허용기준에 근접한 6~7층(높이 약20.8m~23.7m)으로 계획됨
- 효창공원 주요 조망지점에서 사업대상지가 직접 조망되지 않고 효창공원의 특성과 주변 입지여건 등을 볼 때 당초 신청안 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2) 현지조사의견('12.03.07/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서울 효창공원의 북측에서 58~85m 이격된 곳에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량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0~100m 범위 내는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2구역(평지붕 17m, 경사, 경사지붕 20m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8~11층 규모(28.6m~37.3m), 현상변경허용기준 밖인 100m~200m 내는 9~15층(31.5m~48.9m)의 규모로 계획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100m 이내의 구역에서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그 높이가 높아 서울 효창공원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부채납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건물의 층고를 조정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 23.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창고 용도변경

###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농가 창고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농가창고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사적 제396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외
- (3) 신청내용<농가창고→일반 음식점 용도변경>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우수암리 217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기존	변경	증감
용도	창고	일반 음식점	
건축면적	99.54m <sup>2</sup>	106.74m <sup>2</sup>	증 7.20m <sup>2</sup> (화장실)
높이	4.5m(지상 1층)	4.5m(지상 1층)	
구조	블럭조	블럭조	

### 라. 의결사항

- 보류
  - 용도지역 확인 후 사업시행 여부 결정



## 24.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농가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농가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6차(2012.6.13)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외
- (3) 신청내용<농가주택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
  - 사업내용

1차신청	금회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동(근린생활시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적 55.35㎡, 높이 4m, 경량철골조</li></ul></li><li>○ B동(주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적 108㎡, 높이 5.45m, 경량철골조</li></ul></li><li>○ C동(주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적 100.8㎡, 높이 5.45m, 경량철골조</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가주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적 96.6㎡, 높이 5.45m, 경량철골조 지붕 기와잇기</li></ul></li></ul>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5.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교회 증축

###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교회 증축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교회 증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양동 유적(사적 제416호)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60-5 외
- (3) 신청내용<교회 증축>
  - 위치 :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39-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철거		신축	증감
	교회	근생, 주택	교회	
건축면적	174.21㎡	102.85㎡	846.28㎡	증 569.22㎡
연 면 적	194.03㎡	190.95㎡	1,942.40㎡	증 1,557.42㎡
높 이	17m(지상1)	8m(지상2)	28.5m(지하1, 지상3)	증 11.5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6.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

###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4차(2012.4.18), 제5차(2012.5.9), 제6차(2012.6.13)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제 금산사 일원(사적 제496호)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일원
- (3) 신청내용<호텔 증축>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3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 분	증축 전	1차신청	2차신청	3차신청	금회신청	증감 (3차→금회)
대지면적	9,308.00㎡	16,860.00㎡	16,860.00㎡	16,860.00㎡	16,860.00㎡	-
건축면적	1,761.24㎡	4,238.27㎡	4,238.27㎡	6,335.05㎡	5,817.99㎡	517.06㎡ 감
연 면 적	4,531.88㎡	38,653.17㎡	36,085.96㎡	39,555.65㎡	35,661.85㎡	3,893.8㎡ 증
높 이	30.05m (지상 5층)	30.05m (지하 3층, 지상 6층)	30.05m (지하 3층, 지상 5층)	25.95m (지하 2층, 지상 5층)	25.95m (지하 2층, 지상 5층)	-
구 조	철근con't	철근con't	철근con't	철근con't	철근con't	-

- 층별개요

층별	바닥면적(m <sup>2</sup> )					용도
	증축 전	1차신청	2차신청	3차신청	금회신청	
지하 3층	-	5,294.13	5,294.13	-	-	-
지하 2층	-	5,605.63	5,605.63	8,813.26	8,537.56	세탁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지하 1층	-	7,666.40	7,666.40	8,821.98	7,103.04	판매시설, 연회장, 휘트니스
지상 1층	1,182.55	4,238.27	4,238.27	6,335.05	5,813.50	로비, 식당, 커피숍, 객실(67실)
지상 2층	1,353.21	4,037.57	4,037.57	4,388.58	3,634.21	객실 61실→ 57실→82실→56실
지상 3층	666.02	3,363.27	3,363.27	5,301.94	4,613.08	객실 43실→ 70실→91실→71실
지상 4층	665.05	3,061.36	3,061.36	3,552.94	3,461.88	객실 73실→ 70실→62실→52실
지상 5층	665.05	2,819.33	2,819.33	2,341.90	2,498.58	객실 66실→ 66실→39실→36실
지상 6층	-	2,567.21	-	-	-	객실 50실→ 0실→0실→0실
합 계	4,531.88	38,653.17	36,085.96	39,555.65	35,661.85	객실 330실→ 300실→341실→263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4.13/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김제 금산사의 지정구역으로부터 330여m 이격된 금산사 진입부에 기존 6층 규모의 호텔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 호텔의 위치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증축되는 호텔의 규모나 높이가 높고(증축 면적 34,121.29m<sup>2</sup>, 높이 약 35m), 현상변경허용기준에 3구역(경사지붕 11m 이하)로 정하고 있어 김제 금산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김제시장의견

- 도내 국제행사유치 및 새만금 관광개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함.

(3) 금산사주지의견

- 금산사에서는 미관을 해치고 있는 위 지역에 호텔증축계획을 환영함.
- 다만, 사적지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공원집단 시설지구에 부합하게 친환경적이며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현상변경이 허용 되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건물의 외관 등을 문화재와 어울리도록 보완하여 재검토

## 27. 함양 남계서원 주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주변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을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제6차 사적분과 회의('12.6.13)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하여 보류된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 (3) 신청내용<서원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5번지 일원

구분	당초 허가사항 (2010.4.14)	6차 심의안 (2012.6.13)	현지조사 후 수정안	비 고	
토목 공사(조성 면적)	63,092㎡	64,012㎡	64,012㎡	좌 동	
건축공사	총 계	729.32㎡	618.85㎡	566.57㎡	52.28㎡ 감소
	교육문화관	233.28㎡	144㎡	144㎡	좌 동
	선비문화체험관(대강당)	100.8㎡	71.05㎡	71.05㎡	좌 동
	선비문화체험관(소강당)	32.4㎡	27㎡	27㎡	좌 동
	전통예절체험관	32.4㎡	81㎡	81㎡	좌 동
	전통음식체험관	52.56㎡	153.45㎡	101.17㎡	<b>52.28㎡ 감소</b>
	전통의복체험관	38.88㎡	25.92㎡	25.92㎡	좌 동

구분	당초 허가사항 (2010.4.14)	6차 심의안 (2012.6.13)	현지조사 후 수정안	비 고
소매점	85.14m <sup>2</sup>	88.08m <sup>2</sup>	88.08m <sup>2</sup>	좌 동
공중화장실	64.8m <sup>2</sup> (2동)	28.35m <sup>2</sup> (1동)	28.35m <sup>2</sup> (1동)	좌 동
관리사무실	54m <sup>2</sup>	-	-	좌 동
팔각정자	35.06m <sup>2</sup> (2동)	-	-	좌 동
협문	2동	1동	1동	좌 동
우물 복원	-	1개소	1개소	좌 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2.06.22/문화재위원 ○○○, ○○○, ○○○, ○○○)

- 서원의 우측부(남측부)는 지형에 맞게 건물 규모를 줄이고 기존 건물의 철거 전 당시 모습을 토대로 건물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뒤편의 양계장 쪽은 경관상 차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대나무 등을 심고 암거형 배수로는 노출형으로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서원 문화체험과 교육은 현재 서원 건물을 활용하도록 하며, 고직사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나무 등을 살려서 마을 어귀에서 진입하는 느낌으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 서원의 좌측부(북동측부)는 소매점을 주차장 쪽으로 보다 이격하고, 교육 문화관을 소매점 부지로 이격하여 풍영루에서 소나무 등이 조망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점 뒤편 구릉은 비탈면 표토 안정화를 위해 식생토 보강 작업을 한 후 가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서원의 전면부는 높은 나무를 심지 말고 화단 조성도 어울리지 않으며,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조경이 필요함. 조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죽림지역은 원형복원, 양계장은 죽림으로 차폐하고 홍살문의 이전 위치선정, 조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

## 28. 수원 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완화하고자고 변경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번지 일원

(3) 신청내용<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신청(안)>

<당초>

- 수원 화성 외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범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0 ~ 200m 이내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전문 화재청의개별 심의를특할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 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전문 화재청의개별 심의를특할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li> <li>-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li>-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 2m를 가산함</li> <li>-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li> </ul>	

○ 수원 화성 내부

구역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3:10 이상)
2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에 2m를 가산.</li> <li>-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li> </ul>

<변경>

○ 수원 화성 외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범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9m 이하	○ 최고높이 13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16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9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4m 이하	
6구역	○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7구역	○ 문화재높이 21m를 기준하여 양각 7도선 이내(단, 건축물의 높이는 양각선의 가장 낮은 높이를 적용한다.)		
8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단,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평지붕 57m이하, 경사지붕 61m 이하에 한함)		
9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이 그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건축물은 최고높이 2m를 가산함. 단, 건축면적의 60%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해야 함 ○ 허용기준 고시 이전에 허가된 사업은 승인된 높이기준을 적용함.		

○ 수원 화성 내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한다. 단 건축면적의 60%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해야 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08. 6.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연구용역(수원시)
  - 지역지구에 상관없이 500m를 영향검토 구역으로 설정, 작성
- '08. 7. 10 수원 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성곽 내부)
  -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기준(안)을 고시
- '08. 10.21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검토구역 조정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 외곽에서 200m 이내로 함
  - '08. 12.29 경관분과 위원회 심의 부결
    - 영향검토구역(500m 지역)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제시되지 않음
      - 도시계획·산림·문화재 부서 등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영향검토 구역에 대한 수원시 의견 제시 필요
    - ※ '09. 1. 21 화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방안 회의 개최(수원시)
      - 문화재청, 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 관련부서, 남경필 의원실
      - 0~200m 범위는 현 수원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200~500m 범위는 관계부서 실무자 협의를 통해 제작성토록 함
      - 제2종지구 및 팔달문 남측 상업지구는 현 용도지구 범위(15층) 내에서 허용하되, 개별 사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0~500m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09. 4. 3 경관분과 위원회 심의 부결
    - 200~500m 구간 중 일부구역(15층 허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09. 11.11 사적분과 위원회 심의 가결
    - 허용기준안을 도시계획법과 연계하고 일부 구역(9구역)을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결정 반영
  - '10. 1.13 수원 화성 내·외부 현상변경 허용기준 최종 고시
  - '12. 5.23 수원 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신청(안) 보완자료 제출
  - '12. 6.1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 현지조사 의견('12.06.19/문화재위원 ○○○, ○○○,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수원시의 요청에 의해 수원 화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지조사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1~4구역의 높이를 1m 증가하는 사항과 7구역에서 문화재 높이 21m를 기준으로 하여 양각 7°선 이내로 설정하는 사항은 그 기준에 근거가 없고 역사문화환경과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한 명분과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현재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지자체 의견
- 우리 시에 위치해 있는 수원 「화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의 규정에 의거 수원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0-01호(2010.1.13.)]에 의하여 500m 이내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수원 화성은 성곽 둘레가 5,743m로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주변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구도심 슬럼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를 집단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실익이 없는 기존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누구든지 예측을 용이하게 하며 기존건축물과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지형의 높낮이를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를 한층 더 품격 있게 관리하며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구도심의 경관 및 활력을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제시한 개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9.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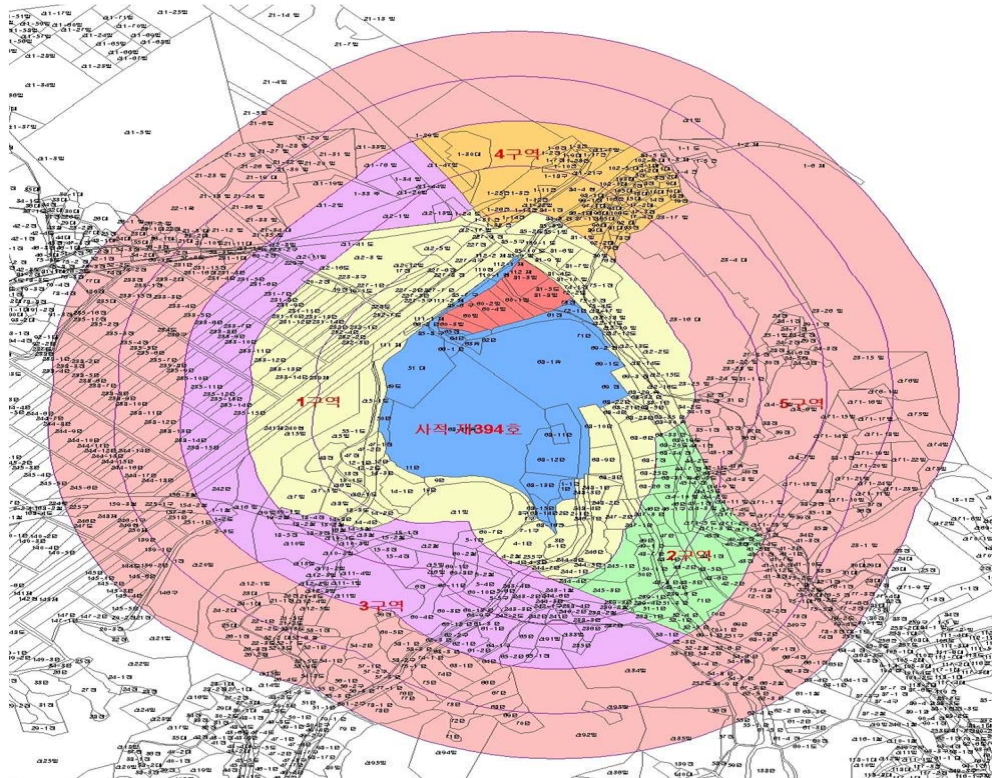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394호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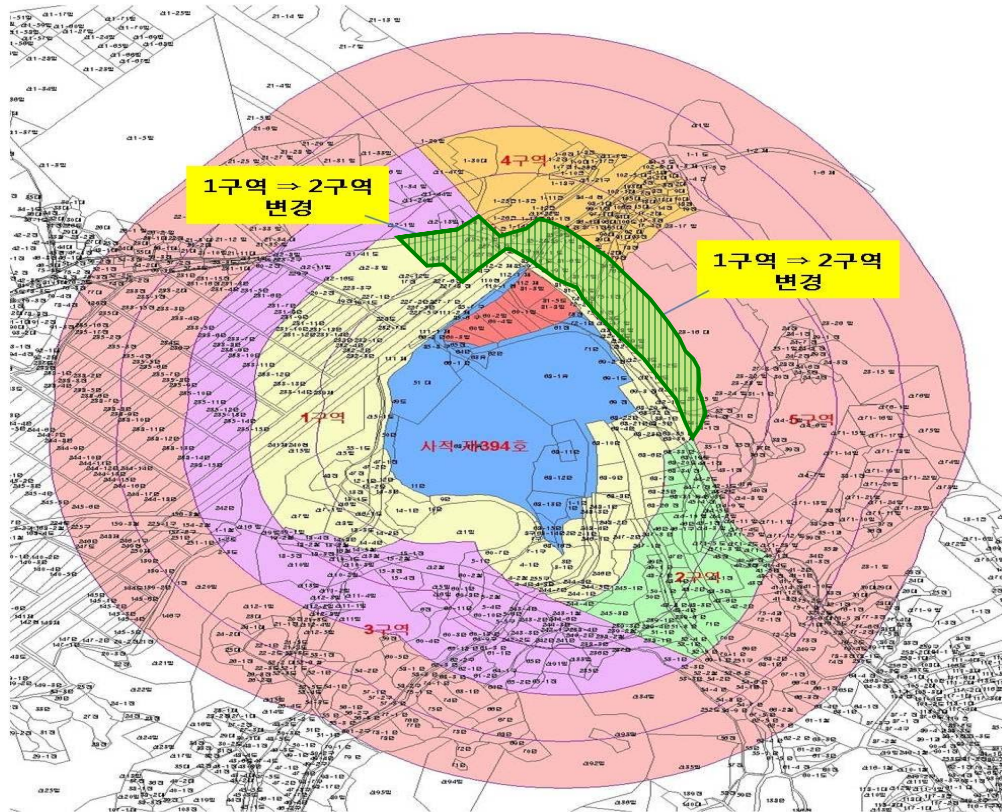
- 강원도 양양군에서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 조정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사적 제394호)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등
- (3) 신청내용<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현행 : 신청지(송전리 227, 오산리 75-1번지 등) 1구역



○ 변경 : 신청지(송전리 227, 오산리 75-1번지 등) 2구역으로 완화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2, 3, 4구역의 경우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여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양양 오산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2010. 1. 13 문화재청 고시 2010-1호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민원 대상토지인 양양군 송전리 227번지, 오산리 75번지 일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제1구역에 해당됨
- 해당 지역은 민원인들은 유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므로, 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하천을 경계로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오산리 유적-대명리조트 간 도로를 경계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본인 사유지에 대한 건축(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대명리조트의 건축(개발)행위에 비해 과도(불공평)하다는 민원이 반복 발생하므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토한 후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30.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등 4건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김○○	<b>&lt;단독주택 건립&gt;</b> ○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9, 10-1, 10-2(50m 이격/1구역) ○ 내용 - 신청면적 540㎡, 건축/연면적 98.46㎡/139.99㎡, 최고높이 7.3m, 지상2층, 1개동, 일반목조	
2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박○○	<b>&lt;단독주택 단지 조성&gt;</b>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72-6 ○ 내용 - 부지면적 9,895㎡, 건축면적 1204.8㎡, 연면적 1,790.52㎡, 건물높이 7.98m(2층)	
3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김○○	<b>&lt;단독주택 신축&gt;</b> ○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16-58, -59(80m 이격/1구역) ○ 내용 - 신청면적 871㎡, 건축/연면적 330/660㎡, 2층, 최고높이 7.5m, 철근콘크리트조	
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김○○	<b>&lt;단독주택 신축&gt;</b>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56-2번지 ○ 내용 - 부지면적 1,123㎡, 건축면적 98.34㎡, 건물높이 6.35m(1층)	

##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단독주택 건립 (김○○)	○ 신청지는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불과 50m 이격되어 매우 근접한 위치이며, 건축규모 또한 2층 7.3m에 이르러 사업시행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의견(강화군수) ○ 위 신청 건물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보존지역)임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격되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와 비교적 근접되어 있다고 판단됨
2	사적 제195호 영주 영릉과 영릉	단독주택 단지 조성 (박○○)	○ 본 신청 건물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하여 단독주택 단지를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단독주택 신축 (김○○)	○ 신청지는 강화외성의 해안가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지형보존지역임. ○ 문화재와는 100m 이내 지역으로 주변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50m 이격된 곳부터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음
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단독주택 신축 (김○○)	○ 본 신청 건물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90m 이격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7-031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5필지 672m<sup>2</sup>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존 지정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642필지 286,237m<sup>2</sup>
  - 추가지정 신청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9-4번지 등 5필지 672m<sup>2</sup>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5.15)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m <sup>2</sup> )	지정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4	대	99	99		
2	"	137-6	대	165	165		
3	"	88-42	대	99	99		
4	"	292-11	대	149	149		
5	"	140-33	대	160	160		
<b>5필지</b>				<b>672</b>	<b>672</b>		

## 2.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산시 중구 동동 51-7번지 등 2필지 370㎡을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소재지 : 울산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198필지 63,343.9㎡
  - 추가지정 신청면적 : 2필지 370㎡
  - 추가지정 후 면적 : 200필지 63,713.9㎡
- (4) 신청사유
  - 울산병영성 북문지 주변에 각각 인접하여 위치한 곳으로, 향후 울산병영성 정비시 공간확보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필요

###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의 북문지 앞 부지(울산시 중구 동동 51-7번지)와 동측 홍일 아파트 위쪽(울산시 중구 동동 116-17번지)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요청이 된 건으로서, 종합정비 기본계획(2010.6.21 수립),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발굴조사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지자체 검토의견>

- 울산 중구 동동 51-7번지
  - 본 신청지는 병영성 북문지 주변에 위치하여 병영성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중요한 지역이며, 건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가 불허되거나 대지조건이 건축을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병영성 정비 및 사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함
- 울산 중구 동동 116-17번지
  - 본 신청지는 병영성 북문지 인근으로 산 구릉지에 도시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로서 절개지(옹벽) 상단부에 위치하여 붕괴의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이며, 병영성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병영성의 구체적인 정비계획 마련 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번 면적(m <sup>2</sup> )	지정신청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울산 중구 동동	51-7	전	238	238			보호구역
2	"	116-17	전	132	132			"
합계		2필지		370	370			

### 3.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의 보호구역 지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 주변의 역사경과 보호와 복원관리를 위하여 태실 주변에 문화재보호 구역을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사적 제444호/2003.03.06 지정)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번지
  - 지정면적 : 5,950m<sup>2</sup>
- (3) 보호구역 지정신청 범위
  - 신청면적 : 6필지 87,695m<sup>2</sup>(국공유 4,318m<sup>2</sup>, 사유83,377m<sup>2</sup>)
- (4) 관리단체 : 경상북도 성주군
- (5) 신청사유
  -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은 지맥의 끝자락에 봉긋하게 솟아오른 태봉(풍수 지리 상 태혈에 해당함)의 정상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성주군에서는 태봉 및 이와 연결되는 지맥의 복원·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 신청한 사항임
  - ※ 현재 지맥이 훼손된 부분은 마을(9가구 22동)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현존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계획 상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복원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복원행위가 가능.

#### 라. 현지조사 의견('12.06.27/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은 현재 태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주변의 구역은 1구역, 2구역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태실을 포함한

태봉을 일체적으로 지정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태봉 북측의 민가에 의하여 훼손된 지역은 태봉을 병풍처럼 둘러싼 국(局)과 태봉을 연결하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연결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음

## 마. 참고사항

### (1) 문화재 현황(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성주세종대왕자태실은 소재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번지이며, 동북쪽의 주산인 선석산(해발 742.4m)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의 끝자락에서 봉긋하게 돌출되어 솟아오른 胎峰(해발 258.2m)이라 부르는 봉우리 정상부에 태실이 자리 잡고 있음
- 봉우리의 형태는 샷갓의 형상이며 주산에서 뻗어 내린 방향인 배후 산 측의 경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삼면의 비탈면은 약 35~45°내외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태봉의 주위로는 논과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서 서쪽으로 휘돌아 남쪽으로 흐르는 계곡천이 있음
- 태봉의 주위로는 左靑龍·右白虎의 역할을 하는 산줄기가 태봉을 두팔로 감싸 안 듯이 둘러져 있다. 이는 풍수 지리적으로 전형적인 突穴에 해당하는 곳이다. 또 동쪽으로 약 350m 떨어져서 수호사찰인 禪石寺가 있음

#### ○ 태실 현황

- 지정된 태실 19기 중 조선 世祖朝에 파괴된 다섯 왕자의 태실을 제외한 14기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며, 파괴된 5기의 태실은 일부 석물을 찾아서 보존하고 있음.

#### ○ 세종대왕 자 태실의 연혁 유래 및 특징

가. 조성시기 : 세종 20년(1438)~24년(1442)

나. 조성배경

- ① 풍수지리의 핵심 이론이기도 한 동기감응론의 영향. 태를 좋은 땅에 묻어 좋은 기를 받으면 그 태의 주인이 무병 장수하여 왕업의 무궁무진한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 ② 왕릉이 도읍지 100리 안팎에 모셔진데 반해 태실은 전국 도처의 땅을 찾아 조성하여 왕조의 은택을 일반 백성에게 까지도 누리게 한다는 의도, 즉 왕조와 백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보자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하나임

다. 태실별 조성시기

- ① 晉陽大君(世祖) : 세종 20년(1438) 3월 11일
- ② 安平大君 : 미상(태실비 파손)
- ③ 臨瀛大君 : 세종 21년(1439) 5월 29일
- ④ 廣平大君 : 세종 21년(1439) 5월 24일
- ⑤ 錦城大君 : 미상(태실비 망실)
- ⑥ 平原大君 : 세종 21년(1439) 5월 26일
- ⑦ 永膺大君 : 세종 21년(1439) 8월 초
- ⑧ 和議君 : 미상(태실비 망실)
- ⑨ 桂陽君 : 세종 21년(1439) 5월 24일
- ⑩ 義昌君 : 세종 20년(1438) 3월 11일
- ⑪ 漢南君 : 미상(태실비 망실)
- ⑫ 密城君 : 세종 21년(1439) 8월 계미
- ⑬ 壽春君 : 세종 21년(1439) 8월 8일
- ⑭ 翼峴君 : 세종 21년(1439) 8월 8일
- ⑮ 永豐君 : 미상(태실비 망실)
- ⑯ 璋(寧海君) : 세종 21년(1439) 8월 8일
- ⑰ (禪陽君) : 세종 21년(1439) 5월 24일
- ⑱ 瑋 : 세종 24년(1442) 10월 23일
- ⑲ 元孫(端宗) : 세종 23년(1441) 윤11월26일

**(2) 추진경과**

- '10.12.09 세종대왕자태실 보호구역 지정 자료보고서 제출(성주군→경상북도)
- '11.10.12 세종대왕자태실 보호구역 지정 자료보고서 제출(성주군→경상북도)
- '11.12.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호구역 변경 심의 가결)
- '12.02.16 세종대왕자태실 보호구역 지정자료보고서 보완제출(성주군→문화재청)
- '12.04.17 세종대왕자태실 보호구역 지정자료보고서 보완제출(성주군→문화재청)

**(3)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조서(면적: m<sup>2</sup>)**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b>[문화재구역]</b>								
1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임	5,950	5,950			기 지정
계				5,950	5,950			
<b>[문화재 보호구역]</b>								
1	경북 성주군	산7-1	임	84,305	78,099			금회신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월항면 인촌리							
2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7-6	임	1,439	1,439			금회신청
3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7-7	임	1,243	1,243			금회신청
4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7-8	임	583	583			금회신청
5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9	임	5,278	5,278			금회신청
6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123	천	23,047	1,053			금회신청
계				115,895	87,695			

## 바. 의결사항

### ○ 보류

- 사유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후 재검토



##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7-034

### 1. 삼척 준경묘 · 영경묘 사적 지정 보고

#### 가. 보고사항

강원도 삼척시 소재 강원도 기념물 제43호 「삼척 준경묘·영경묘」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안의 검토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6차 심의 회의(6.13)때 조건부 가결에 따라 제기된 의견 (영경묘에 대한 평창이씨 관향표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다. 보고내용

(1) 보고자 : ○ ○ ○

(2) 대상문화재명 : 삼척 준경묘 · 영경묘(강원도 기념물 제43호)

(3) 보고내용<영경묘에 대한 평창이씨 관향표기 여부>

○ 논의배경

- 지정예고 기간('12.4.26~5.25) 사적 지정사유 중 『...삼척 영경묘는 평창이씨의 능묘로...』 부분에서 평창이라는 관향 삭제 의견 접수

○ 제6차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6.13일)

- 내용 : 영경묘의 관향표기 여부에 대해 비문 등의 고증자료 검토 후 사적 지정

○ 검토결과 : 영경묘의 주체 표현 시 “평창”이라는 관향 삭제 타당

- 삼척시 의견 : 평창이씨의 관향 표현은 지정자료 작성 시 학술적 자료를 잘못 인용

- 전문가의 자문의견

- 자문위원 : 강원대학교 한국사 배재홍 교수
- 자문내용 : “평창”관향은 생략하고 “이씨”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

아래의 자료에서 보듯이 영경묘의 주인공인 이양무의 처 이씨의 관향을 “평창”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씨”라고만 표기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양무 장군의 부인을 표기할 때 관향은 생략하고 단지 “이씨”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괘>, <선원보략> : 황비(皇妣) 이씨는 상장군 이강제의 딸이다

<삼척지방의 금석문과 기문> : 목조의 황비(皇妣) 이씨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괘> : 축문- “선조비이씨존령(先祖妣李氏尊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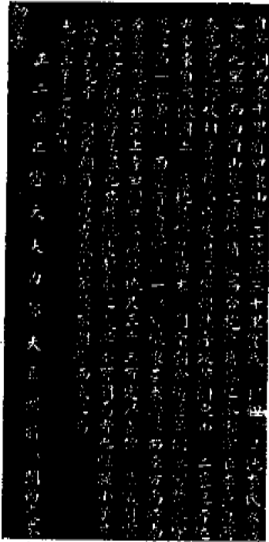
- 영경묘 비석의 비문내용

현재 영경묘 비각 내에 있는 비석인 《大韓永慶墓》비 후면 음기에 『...穆祖皇妣李氏...』라 표기되어 있음.

## 라. 참고사항

(1) 영경묘 비문(원문) 및 해설

# 영경묘 비문(원문) 및 해설



永慶墓  
大韓

永慶墓 碑石

(法記)

自蘆洞而東十里有四東山距三陟治三十里寔我 穆祖 皇妣李氏衣履  
之藏也坐卯而向西山勢之雄偉稍遜而含抱靈藉勝之奉寧李臣李重夏所  
奉邑中紀傳故相臣許穆爲府使時所撰州誌序及蘆洞東山 二墓記所述  
古事東伯卿徽圖上 墓地精擇築始末 列聖朝命道臣年例奉寧恭奉守  
護之節一如蘆洞 兩墓所文歐實蹟一以可徵東至求壽墓西至方島峙南  
至多羅龜尾北至上寺田洞口各以量地尺三千三百定界立標 墓儀制其  
祀典視蘆洞嗚呼是墓也其於遠邇報本之義必不可闕焉者也惟脫小子其  
敢曰式克于 列聖朝所未建者哉亦不敢不圖惟而成之焉

光武三年己亥十一月 日

正二品 正憲 大夫 內部 大臣 副將 閔丙爽奉

勅撰書

## 영경묘(永慶墓) 비석 후면기록---

노동(蘆洞)에서부터 동쪽 10리쯤 되는 곳에 동산(東山)이 있는데 삼척부의 소재지에서 30리 거리이다. 이곳은 우리 목조대왕의 어마님(皇妣) 이씨(李氏)를 모신 묘소(衣履之藏)로 묘좌유향(卯坐酉向)이다.

산세의 웅장함은 좀 부족하지만 지로 감싸고 쌓이고 넉넉한 형국은 <준경묘>보다 낫다. 봉심한 재신 이종하가 아뢰어 임중기전(邑中紀傳)은 "고(故) 상신(相臣) 허목(許穆)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지은 주지(州誌)의 서문 및 노동과 동산 두 곳의 산소에 대해 서술한 고사(古事)와, 강원감사 정철이 재임 때에 묘지의 지도를 그려 올리고 수축하기를 청한 전후의 시말과 열성조께서 감사에게 명하여 해마다 봉심하고 벌목을 금지하며 산소를 수호하게 하는 절차를 노동의 산소와 똑같이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두 산소의 문헌과 실제 일체물 증거 할 수가 있다.

동쪽으로 구수봉(求壽峯)에 이르러 서쪽으로 방우지(方島峙)에 이르러 남쪽으로 다라구미(多羅龜尾)에 이르러 북쪽으로 상시전동구(上寺田洞口)에 이르기까지 각각 양지적으로 3천300척을 경계로 정하여 표를 세웠으며 묘의(墓儀)를 제정해 두고 제사의 전례는 노동에 겸주었다.

아. 이 일은 추모하고 보존하는 의리에 있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직 짐 소자가 감히 열성조가 미쳐 겨들을 내지 못하여 하지 못하였던 것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또한 감히 그 일을 이루기를 꾀하지 않아서도 안 될 일이었다.

광무 3년(1899) 기해 11월 일

정2품 정헌대부내부대신부장(正二品正憲大夫內部大臣副將)

신(臣) 민병석(閔丙爽)은 왕명을 받들어[奉勅] 삼가 쓰다.

출전 : 『금석록』,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2012.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남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내 망루 고상가옥 지붕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7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	<망루 고상가옥(수혈주거) 지붕정비> ○ 위치 : 봉황동 유적 경내 ○ 내용 : 노후된 갈대 교체 ○ 수량 : 6동 ○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	허가	'12.05.29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송파구	○○○	<풍납동 토성 내 임시주차장 조성> ○ 위치 : 풍납동 126-181 등 9필지 ○ 면적 : 총 1,325㎡(45면) ○ 방법 : 블록설치	허가	'12.06.25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	<공산성 여장복원 및 석축정비> ○ 공산성 여장복원 - 금서루 주변 13타 등 71타 ○ 공산성 석축정비 - 자연석 석축 270.39㎡ - 석축상부 잔디 식재 100.03㎡ ○ 허가조건 -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지도 등을 통해 원형대로 복원	조건부 허가	'12.06.25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	<공산성 성곽 외부 수목정비> ○ 사업면적 : 34,555㎡ ○ 수목별채 : 652주 ○ 수목식재 - 소나무 70주 - 관목류 30,414주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	조건부 허가	'12.06.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경북 영주시	○○○	<p>&lt;마을 하수도 개체공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425 일원(약 200m 이격/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 : L=74.5m</li> <li>· 토공 : 터파기100m<sup>3</sup>, 되메우기74m<sup>3</sup></li> <li>· 배수공 : U형하수도(500*500) L=74.5m, 맨홀뚜껑(1000×600×70) 설치 15개소</li> <li>· 포장공 : 점토블럭(T=0.06) 271m<sup>2</sup></li> </ul> </li> </ul>	허가	'12.06.28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	<p>&lt;우량 소나무 보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남한산성 내 남문~영춘정 구간</li> <li>○ 내용 : 고사지 및 쇠약지 이병지 제거, 경합목, 고사목 제거, 지지대 설치, 외과수술 등</li> <li>○ 면적 : 2ha</li> <li>○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2.06.21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p>&lt;우물터 발굴 조사(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진주성 내 중앙잔디 내부</li> <li>○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면적 : 25m<sup>2</sup>(5m×5m)</li> </ul> </li> <li>○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면적 : 49m<sup>2</sup>(7m×7m)</li> </ul> </li> <li>○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조사 후 반드시 지형을 원상 복구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2.06.29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 구리시	○○○	<p>&lt;왕숙천 구간 도시가스 배관 및 포장공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113 (397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개설 : L=550m, B=4~6m</li> <li>- 토공 : 절토 678m<sup>3</sup>, 성토 948m<sup>3</sup></li> <li>- 옹벽 : L=28.1m, H=3~3.5m</li> </ul> </li> <li>○ 기간 : 2012.05.15~2013.05.15까지</li> </ul>	허가	'12.05.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강원 영월군	○○○	<p>&lt;생명·생태의 숲 조성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영흥리 산131-1번지 등</li> <li>○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 생명의 숲(30,261㎡), 생태의 숲(21,553㎡)</li> <li>- 수목식재 : 생명의 숲(소나무, 산단풍 외 4종 등), 생태의 숲(소나무, 느티나무 외 9종 등)</li> <li>- 시설 등 : 생명의 숲(목교 4, 데크로드 204m 등), 생태의 숲(초정3, 황토포장 1,583㎡ 등)</li> </ul> </li> <li>○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 생명의 숲(33,096㎡), 생태의 숲(35,499㎡)</li> <li>- 수목식재 : 생명의 숲(소나무 14주 등), 생태의 숲(소나무, 느티나무 외 15종 등)</li> <li>- 시설 등 : 생명의 숲(목교 6, 데크로드 110m 등), 생태의 숲(목재계단, 평의자, 방향안내판 등 등)</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는 생육환경 및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적정규모로 조성</li> <li>- 황토포장 대신에 잔디메트 시공 검토</li> <li>- 솟대 제거</li> <li>- 구거정비 확대</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2.06.14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경기 파주시	김○○	<p>&lt;도로개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186호(150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245㎡, 콘크리트포장 50㎡</li> </ul> </li> <li>○ 기간 : 2012.06.15~2013.05.15까지</li> </ul>	허가	'12.06.15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부산 금정구	○○○	<p>&lt;산성고개 보행로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2-3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15m이격)</li> <li>- 내용 : 데크로드 설치(L330, B1.8m)</li> </ul> </li> <li>○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2-3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5m이격)</li> <li>- 내용 : 데크로드 설치(L330, B1.8m)</li> </ul> </li> </ul>	허가	'12.06.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패총	경남 창원시	○○○	<p>&lt;서측 범면정비 공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성산패총 내</li> <li>○ 내용 : 거적덮기, 발아종자 살포, 철망설치, 등나무식재 등</li> <li>○ 규모 : 26m×18m</li> <li>○ 기간 : 허가일~2012.09.30까지</li> </ul>	허가	'12.06.21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 연천군	○○○	<p>&lt;수해복구공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687-1(문화재구역 내)</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형측구 21m, PC암거(2m×2m) 36m, 가드레일 20m</li> <li>- 아스콘포장복구 178㎡, 생태복원(T=3cm) 353㎡</li> </ul> </li> <li>○ 기간 : 2012.05.30~2012.08.30까지</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설계도서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시행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2.05.30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경기 파주시	김○○	<p>&lt;가족묘 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59-1(390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990㎡, 임시도로 304㎡</li> <li>- 봉분 10기(1m), 상석 10개(1.5m*1.5m)</li> <li>- 비석 10개(1.5m), 망주석 10개(2m), 계단 4식</li> </ul> </li> <li>○ 기간 : 2012.05.18~2013.05.17까지</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시행하되, 자연지형을 살려 절토·성토량을 최소화할 것</li> <li>- 계단에 사용되는 석재는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봉분 주변에는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2.05.18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인천 강화군	홍○○	<p>&lt;양어장 재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81-1(5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4,838㎡, 건축/연면적 983.2㎡/947.2㎡</li> <li>- 높이 : 4.9m(1~4동), 3m(5동)</li> <li>- 5개동, 지상 1층, 철골구조(1~4동), 경량철골구조(5동)</li> </ul> </li> <li>○ 기간 : 2012.06.21~2013.12.30까지</li> </ul>	허가	'12.06.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강원 양양군	○○○	<2012년도 낙산사 일원 및 주변 소나무림 정비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5-2, 산6-1, 28임 일대(문화재구역 및 주변) ○ 내용 : 하층식생 정비, 수관정비, 영양공급, 외과수술 등	허가	'12.06.14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충북 보은군	○○○	<보은 법주사 내 동암 관음전 보수> ○ 관음전 보수 1식(도리이상 해체보수)	허가	'12.06.26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